

**채용질서 위반행위 신고 안내**

- 채용강요 등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민원마당)**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관리과 / 지역협력과)**
- 공정거래법(기계약대강요) 및 형법(강요·업무방해 등) 위반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 (전화) 1577-8221 / (이메일) con112@korea.kr**

**채용질서 위반행위 처분사례**

7노조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측에 먼저 계약된 비계약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공정에 자기 조합원을 새로 채용할 것을 요구함.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7노조는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를 방해하며 해당 현장의 원정이 운영하는 타 현장의 작업까지 거부함. 결국, 사측은 해당 비계약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공정 종사자들을 7노조의 조합원으로 교체  
 ⇒ 신고접수 전 조사 후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머니투데이, '23.1.25>



○ 호텔은 '22.4월 채용사이트에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 광고를 게재하면서 입사지원서에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구직자 본인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학력·직업 등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요구 ⇒ '22년 상반기 지도점검 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국일보, '22.9.7>

※ '22년 상반기 지도점검에서 직무무관 개인정보 기재 위반 사례 등 10건 과태료 부과

행정구역	지청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서초구, 동대문구	서울청	02-2250-5814
강남구	서울강남지청	02-3465-8409
서울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서울동부지청	02-2142-8508
서울 영등포구, 마포구, 은평구, 서대문구	서울서부지청	02-2077-6113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서울남부지청	02-2639-2344
성북구, 도봉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북부지청	02-950-9731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관악지청	02-3282-9125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용진구	중부청	032-460-4512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인천북부지청	032-540-5726
중부 부천시, 김포시	부천시청	032-320-8963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의정부지청	031-850-7714
고양시, 파주시	고양지청	031-931-2908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경기지청	031-259-0352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성남지청	031-788-1582
경기도 안양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양지청	031-463-7387
안산시, 시흥시	안산지청	031-412-1912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지청	031-646-1117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지청	033-269-3563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양양군, 고성군	강릉지청	033-650-2531
강원 원주시, 횡성군	원주지청	033-769-0831
태백시, 삼척시	태백지청	033-550-8605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영월출장소	033-371-6212
부산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부산청	051-860-2152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동부지청	051-559-6660
북구, 사상구, 강서구	부산북부지청	051-309-1576
부산 창원시, 창원군, 함안군, 의령군	창원지청	055-239-6523
울산광역시	울산지청	052-228-1821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지청	055-370-0981
진주시, 사천군,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진주지청	055-760-6544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통영지청	055-650-1939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수성구, 북구,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대구청	053-667-6330
서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칠곡군(구미국가산단 제외), 고령군, 성주군	대구서부지청	053-605-9009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포항지청	054-271-6772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구미국가산단 포함)	구미지청	054-440-2012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영주지청	054-639-1171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안동지청	054-851-8017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제주자치도	광주청	062-975-6274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주지청	063-240-3316
익산시, 김제시	익산지청	063-839-0004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군산지청	063-450-0609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목포지청	061-280-0112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여수지청	061-650-0114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대전청	042-480-6225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청주지청	043-299-1112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천안지청	041-560-2871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충주지청	043-840-4023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부여군	보령지청	041-930-6266
서산시, 태안군	서산출장소	041-661-5624

www.moel.go.kr



구직자에게는 권익을, 기업에게는 인재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한 채용절차를 도입하고 싶다면?**

**✓ 공정채용 컨설팅**

기업의 경영목표, 인재상 등을 연계한 맞춤형 공정채용제도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① 채용 상황 진단 → ② 공정채용제도 설계 →  
 ③ 채용제도 이행 피드백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www.ncs.go.kr) "공정채용 컨설팅"에서  
 참여 신청(150개소 내외)

\* 최근 3년 내 「채용절차법」 위반 전력 사업장 우선 지원

**✓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직군·직무별 필요한 능력을 체계화한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개발·  
 보급해 공정채용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능력중심 채용모델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  
 및 구직자

**지원내용**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최신화 및 활용 지원

\* '22년까지 총 261개 채용분야(NCS 소분류 기준) 중 117개 채용분야  
 개발·최신화 완료, '23년 10개 분야 개발 및 10개 분야 최신화 예정

**지원방법** 사업 누리집(www.ncs.go.kr) "공정채용 자료실"을 통해 제공



**청년을 신규 채용했을 때,  
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23년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연매출액 기준\*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지원내용**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채용단계별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



## 채용광고 및 지원서 접수단계

### ▶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채용광고를 하면 안됩니다. (법 제4조제1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면 안됩니다. (법 제4조제4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가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4조의3)

\*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혼인여부는 기혼, 미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유무·연령·수, 시부모 유무, 자녀계획 등 혼인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채용)에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 :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

### ▶ 입사지원서 표준양식 사용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포함)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표준양식 사용을 권장합니다. (법 제5조)

\* 활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 또는 워크넷(고객센터>서식자료실)

### ▶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6조)

### ▶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법 제13조)



## 채용 심사 단계

### ▶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4조제2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채용강요, 금품수수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수수하여서는 안됩니다. (법 제4조의2)

※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법 제8조)

###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법 제9조)

※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예시 건강검진 진단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병원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의료 견습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채용 확정 단계

### ▶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됩니다. (법 제4조제3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채용여부의 고지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법 제10조)

### ▶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 채용여부 확정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구인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 중에 구인자가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시간

·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법 제11조제4항)

\*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인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권 및 행사방법, 보관기간, 청구기간 도래 후 파기, 반환비용 부담 등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법 제11조제6항)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